

#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검토보고서》

### 1. 제출일자 및 제출자

- 제출일자 : 2004. 4. 26.
- 제출자 : 영등포구청장

### 2. 제안사유

-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과 경영상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운용되고 있는 중소기업육성기금은 대출한도와 이자 및 상환조건이 중소기업자에게 유리하게 운용되고 있으나
- 기금 사용은 담보 조건부로서 담보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기금 지원에 어려움이 있어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여유자금 일부를 서울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하여 관내 중소기업자와 소상공인들이 담보 부담 없이 편리하게 용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며
- 또한 중소기업육성지원시설에 대한 지원근거규정을 마련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여 시행코자 우리 구 의회의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3. 주요 개정내용은

- 제4조(기금의 용도)
  - 중소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사업비 출연(서울신용보증재단 등) <신설>
  - 중소기업지원시설의 설치비 등 지원(중소·벤처기업지원센터 등) <신설>
  - 기금은 중소기업의 육성을 위한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신설>

### 4. 검토의견

- 영등포구청장이 제출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은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하고 중소기업의 육성 발전을 위하여 담보능력이 부족한 건실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적극 지원이 필요한 시기이며, 지역경제와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적절한 내용이라 사료됩니다.

다만, 기금 출연시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여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원금 잠식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위원님들의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있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서울특별시영등포구중소기업육성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2004. 5. 3.  
 보고자 : 박창수